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2851호

제출년월일 2021. 10. 제 출 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,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O 법적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(공공기관의 책무)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3조(청렴의 의무)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(안 제1조~제2조)
 -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 실현 및 청렴문화 조성·확산을 목적
 - 용어(공직자 및 부패행위)의 뜻을 정의
- O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하여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법령 준수, 공정·청렴 직무수행, 일체의 부패행위 금지
- O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매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
-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(안 제7조)
 -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추진
- O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9조)
- 각 사업시행 및 청렴도 평가·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
- O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1. 9. 15. ~ 9. 27.(12일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부서협의결과
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
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

나) 경 기 도 : 조사담당관

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·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공직자"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.
- 2. "부패행위"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김포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운 영으로 김포시 소속 공직자, 산하기관 등의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공직자의 청렴 의무)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-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- 1.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
 - 2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
 - 3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·추진과제
 - 4.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- 제7조(사업시행 등)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교육 및 홍보 사업
 - 2. 청렴문화 체험·실천 관련 사업
 - 3. 청력활동 평가
 - 4.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·설문조사
 - 5. 공직자 및 산하기관 반부패·청렴도 평가 및 조사
 - 6.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· 운영
 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·홍 보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- 제8조(협력체계)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9조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)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「개인 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, 소속,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 · 이용되어야 한다.
- 제10조(포상) 시장은 김포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감사담당관
입 안 자	실·과·소장	감사담당관
	성 명	박 만 준
	팀 장	청렴조사팀장
	직위·성명	이 영 권
	담 당 자	지방행정주사
	성명·전화	김 준 환(☎2097)